2023년도 제1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3. 7. 6.(목),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위정현위원, 하병현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5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60건(안건번호 제2023-85658호~8641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85658호~85664호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5665호~85670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5671호~85678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85679호~8641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7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61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156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 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 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함.
- 반하람 주임: 위원님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 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 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4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3-85658호~8641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85658호~8566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 청한 건으로, ♠♠♠ 블로그 및 ♥♥ 카페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17건임.

(안건번호 제2023-8566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 ◆◆ ◆◆◆◆'의 불법 번역본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8566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의 불법 번역본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 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85658 호~8566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85658호~8566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85665호~8567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 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및 '◈◈◈◈'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10건임.

(안건번호 제2023-8567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건번호 제2023-85665호~8567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85665 호~8567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85665호~8567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 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856716호~85678호는 민원인(실명 2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 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만화·영상(영화·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38건임.

(안건번호 제2023-8567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영상 (만화) '●●●'의 230화를 30 포인트에 판매 중임.

(안건번호 제2023-8567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영상 (방송) '■■■■ ■'의 3화~6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 중 임.

해당 안건번호 제2023-856716호~85678호의 38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3-85671호~85672호의 경우 동일 건수가 1개인데

안건번호 제2023-85673호의 경우 동일 건수가 4개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동일 건수는 게시자가 특정 OSP에 동일한 저작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한 게시물의 합계를 의미함. 안건번호 제 2023-85673호의 경우 만화 '●●●'의 228화, 230화, 231화, 232화를 '▲▲▲ ▲▲'라는 동일한 게시자가 '♣♣♣♣'라는 동일한 OSP에 전송하고 있음.
- A 위원: 동일한 게시자가 게시한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 4개가 하나의 안건으로 묶여있다는 의미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856716 호~856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856716호~8567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856716호~8567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 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 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한 사안임.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85882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의 4화 전체분 량을 10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19.부터 ENA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영화 '인디아나 존스:운명의 다이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86104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의 전체분량을 32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28.에 극장 개 봉한 영화임.

(웹소설 '내가 키운 S급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86330호는 웹하드에서 웹소설 '내가 키운 S급들'의 1화에서 870화까지의 분량을 .txt 파일 형태로 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문피아, 리디북스, 카카오 페이지 등에서 연재된 웹소설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3-856716호~856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3-856716호~8567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856716호~85678호 중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85658호~85664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85665호~85670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85671호~85678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856716호~8567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13.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